

# 예산총칙

2023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85,437,802	20,563,134
일반회계	602,949,135	18,088,474
특별회계	82,488,667	2,474,660
공기업특별회계	42,495,600	1,274,86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2,495,600	1,274,868
기타특별회계	39,993,067	1,199,792
주택사업특별회계	3,400	102
의료보호특별회계	463,576	13,90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30,958	21,92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504,707	15,141
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059,076	31,772
수질개선특별회계	37,231,350	1,116,941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조서] "불임"과 같다.

제 5 조 [영시이월사업조서]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881,649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2,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